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6. 11 선고 2019나1373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6. 11 선고 2019나13738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0. 31 선고 2018가합106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남일

피고, 피항소인별지 1 피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7을 제외한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신철민

변론 종결2020. 4. 16.

판결 선고2020. 6. 11.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0. 31. 선고 2018가합1062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 C, D, E, F, G, H, J, K, L, M, N, O, P,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부분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제1항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피고별 청구금액 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제1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 및 피고 I, Q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제1항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제1항 기재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I, Q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피고별 청구금액 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3.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2012년 당시 별지 2 피고별 청구금액 표의 '직위(2012년)'란 기재 각 직위로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임원들이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1) 원고와 피고들은 임원인 피고들이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경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경영계약서에는 '회사1) 는 을2) 에게

전년도 성과에 의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원고의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과 MOU를 체결하고, 산업은행이 MOU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원고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면 원고는 아래와 같은 MOU 평가결과등급기준에 따라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평점	95이상	95~90	90~85	85~80	80~75	75~70	70미만
지급률	100%	90%	80%	70%	60%	50%	0%

3) 산업은행은 원고의 2012년도 경영평가를 하여 평점 70.91점을 부여하였고, 원고는 2013. 5. 7. 피고들에게 위 MOU 평가결과등급기준 중 F등급(성과급 지급률 50%)에 해당하는 별지 2 피고별 청구금액 표의 '성과급 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임원들에게 지급할 성과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산업은행과 체결한 MOU에 따르면, 원고는 임원들에게 2012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야 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고들에게 별지 2 피고별 청구금액 표의 '성과급 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2012년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2012년도 성과급은 법률상 원인을 흠결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지급받은 성과급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임원들에 대한 2012년도 성과급 지급요건 충족 여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경영계약서에 원고는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이에 따라 원고는, 산업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그 MOU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고, 위 MOU 외에는 달리 원고가 임원들에게 지급할 성과급의 액수 등을 정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산업은행과 체결한 위 MOU는 원고가 임원들과 작성한 경영계약서에 따라 성과급 지급의 세부사항을 정한 기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와 산업은행 사이에 체결된 2012년 MOU에는 원고에게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원들에 대한 2012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원고에게는 약 3,08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임원들에 대한 2012년도 성과급 지급은 그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원고의 2012년도 경영평가 합산점수가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최저점수에 미달하는 점에서도 2012년도 성과급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도 원고의 2012년도 성과급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추가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 위와 같이 원고의 임원들에 대한 2012년도 성과급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2 피고별 청구금액 표의 '성과급 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성과급으로 잘못 지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각각 지급받은 성과급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지급받은 성과급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을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 I은 2008년경부터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 Q은 2001년경부터 AH의 사내이사로 각각 재직하다가 원고가 2012. 12. 27. AH을 합병하고, AH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여 원고의 임원이 된 사실, AH의 임원에 대한 2012년도 성과급은 원고의 AH에 대한 2012년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었던 사실이 각각 인정되는바, 산업은행의 원고에 대한 2012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 사정만으로는 피고 I, Q에게 지급된 2012년도 성과급이 그 원인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20. 5. 29.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피고 I, Q에게 지급한 2012년도 성과급은 원고와 산업은행 사이의 MOU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그 MOU에서 정한 2012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 I, Q에게 지급된 2012년도 성과급 또한 법률상 원인을 흠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피고 I, Q에 대하여 AH의 2012년 경영평가에 따라 2012년도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AH의 2012년 경영평가에 따른 피고 I, Q에 대한 성과급이 얼마인지가 드러나지 않는 한 원고가 피고 I, Q에게 지급한 2012년도 성과급이 법률상 원인을 흠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I, Q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B 등 30인'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나, 피고 I, Q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는바, 피고 B 등 30인은 원고에게 별지 2 피고별 청구금액 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돈4) 및 각 해당 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 등 30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그 성과급 지급일인 2013. 5. 7. 이후의 이자를 함께 청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에서 선의의 수익자는 그 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악의의 수익자만이 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748조 제1항, 제2항 참조), 피고들이 성과급을 지급받은 위 2013. 5. 7. 당시 2012년도 성과급 지급요건이 흠결된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3. 5. 7. 이후의 이자 지급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참조), 피고 B 등 30인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8. 5. 4.부터 악의의 수익자라고 볼 것인바5), 결국 피고 B 등 30인은 원고에게 별지 2 피고별 청구금액 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위 2018. 5. 4.부터 피고 B 등 30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등 30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B 등 30인은, 피고 B 등 30인에 대한 2012년도 성과급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되었고, 그 고용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소멸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지급받은 2012년도 성과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등 30인 사이에 작성된 경영계약서, 이에 따라 원고가 산업은행과 체결한 MOU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 등 30인에게 2012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B 등 30인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B 등 30인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이 피고 B 등 30인에게 지급된 2012년도 성과급의 법률상 원인이 된다는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B 등 30인은, 위 MOU는 원고와 산업은행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위 MOU가 피고들에게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 B 등 30인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임원들에게 지급할 성과급의 산정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더욱 부당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임원들 사이에 작성된 경영계약서에는 '원고가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성과급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가 임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나, 원고가 임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과급의 최저금액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는 임원들에게 지급할 성과급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MOU는 그러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원고가 마련한 성과급 지급기준으로서 임원들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 B 등 30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피고 B 등 30인은, 피고 B 등 30인에게 지급된 2012년도 성과급이 그 지급기준에 위반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 등 30인에 대한 2012년도 성과급 지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수정, 취소하고, 그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률상·계약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 등 30인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는 민법 제741조에 기한 의무로서 이와 별개의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6), 피고 B 등 30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 B 등 30인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 B 등 30인에 대한 2012년도 성과급 지급에는 '성과급 지급결정'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선행하여 보건대, 원고가 산업은행과 체결한 MOU에는 원고의 경영평가점수를 산정하는 산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특히, '당기순손실 발생시 성과급 미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의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은 위 MOU에 따라 형식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원고 또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지급결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성과급 지급결정'을 2012년도 성과급 지급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7)).

따라서, 피고 B 등 30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등 30인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등 30인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I, Q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 B 등 30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각 취소하고, 피고 B 등 30인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남양우

판사조미화

판사김윤석

별지

- 1) 원고를 의미한다.
- 2) 피고들을 의미한다.
- 3)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원고의 급여규칙 제11조에도 '회사의 경영성과 연동하여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에 따른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을 제14호증 6쪽 참조).

4)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 U이 20,000,000원, 피고 Z이 14,253,819원을 각각 반환하였음을 자인하면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금원으로 산정하였고, 그러한 내역이 별지 2 피고별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란에 반영되어 있다.

5)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참조.

6) 피고 B 등 30인은,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에서 잘못 지급된 성과급 환수를 위한 법령상·계약상 근거를 마련한 사례들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도 성과급 환수를 위한 법령상·계약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 등 30인이 들고 있는 사례들은 성과급이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급되거나, 사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그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성과급 반환을 위한 별도의 법령상·계약상 근거를 마련한 사례들로 보인다.

7) 한편 원고는,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의사표시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성과급이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고, 따라서 착오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원고의 의사표시(법률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